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2가단1012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1. 피고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1. 접수 제1654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이재석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B(이하 '채납자' 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7,823,0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나. 피고는 채납자 배우자의 동생인 처제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채납경위 및 피보전 권리의 성립

가. 채납경위

채납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신고 후 무납부 하거나 중간예납세액 고지액을 무납부하여 원고 산하 성동세무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채납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납자는 소재기일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국세 207,823,090원을 채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참조).

<표1> 채납자의 현재 국세채납액

(단위: 원)

순번	관할	세목	귀속	최초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채납액	고지세액
1	성동	종합소득세	2018	2019. 8. 31.	2018.12.31.	20,347,790	21,288,660
2	성동	종합소득세	2018	2019. 9. 30.	2018.12.31.	26,057,280	21,141,910
3	성동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19	2019.11.30.	2019.06.30.	12,914,470	10,607,500
4	성동	종합소득세	2019	2020.03.10.	2019.06.30.	12,596,270	10,607,500

		(중간예납)					
5	성동	종합소득세	2019	2020.11.28.	2019.12.31.	51,484,900	45,662,910
6	성동	종합소득세	2019	2021.01.26.	2019.12.31.	31,130,790	27,982,740
7	성동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0	2020.12.22.	2020.06.30.	53,291,590	47,329,000
합계						207,823,090	184,620,220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3호)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2) 대법원 판례는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본세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상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역시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날인 2019. 10. 28. 이고, 위 <표1>에 기재된 원고의 채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중 순번 1번 내지 4번의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사해행위일 이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4)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5) 위 <표1>에 기재된 원고의 채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중 **순번 5번 내지 6번**의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9. 12. 31. 로 사해행위일인 2019. 10. 28. 이후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C호를 2019년 1월에, D호를 2019년 3월에, E호를 2019년 9월에 각각 매도함에 따라 분양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실제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이 있어 그 법률관계에 기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따라서, 위 <표1>에 기재된 조세채권 중 **순번 1내지 6번**의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전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로서의 부동산 매매

가. 피고와 채납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

1) 채납자는 위 <표1>의 **순번 1 내지 2**에 기재된 종합소득세의 고지서를 2019. 8. 7. 과 2019. 9. 9. 에 각각 수령하고도 납부하지 않아 채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2019. 10. 28.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1. 접수 제1654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 주었

습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 정수 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2) 원고는 2021년 7월에 국세징수법 제36조(질문검사)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대금 지급내역 및 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한바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전세금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회신 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F의 답변서 참조).

3)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330,000,000원은 2019. 10. 24. 채납자가 채납자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전세계약이 끝날 무렵인 2021. 5. 6. 채납자의 배우자인 소외 F(이하 'F' 이라 합니다)이 30,000,000원을 임차인에게 1차 반환하였고, 2021. 7. 13. F으로부터 30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서 피고가 임차인에게 나머지 300,000,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갑 제8-1증 부동산 전세계약서, 갑 제8-2호증 전세 권설정계약서, 갑 제9-1호증 이 사건 부동산 전세금 및 관리비 입금내역, 갑 제9-2호 증 이 사건 부동산 전세금 반환 내역 참조).

4)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임차인에 매월 지급하는 관리비 5만 원을 채납자가 수령하였습니다(갑 제9-1호증 이 사건 부동산 전세금 및 관리비 입금내 역 참조).

5) 이 사건 계약 이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대, 채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해 준 이후에도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매월 수취한 사실과 채납자의 배우자인 소외 F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사실로 보아 매매대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두었을 뿐, 실질 소유권에 기한 관리와 통제를 채납자가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사해행위 당시 채납자의 재산상태 - 적극재산

1) 대법원 판례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2) 더욱이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에서는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중간생략) 그러나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하여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을 종료시키고 위탁자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 시킬 수 없다」 라는 요지로 판결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당시 채납자의 배우자 소외 F을 채무자로 설정한 담보신탁부동산을 위 법리에 따라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채납자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 와 같습니다(갑 제10호증 신탁원부 참조).

〈표2〉 B 적극재산

(단위: 원)

번호	내용	평가액	평가방법	비고
1	서울 광진 G H호	-	평가제외	소외 F을 채무자로 설정한 담보신탁 부동산 (물상보증)
2	서울 광진 G I호	-	평가제외	
3	서울 광진 G J호	-	평가제외	
4	서울 광진 G K호	-	평가제외	
5	서울 광진 G L호	-	평가제외	
6	서울 광진 G M호	-	평가제외	이 사건 부동산
7	N조합 (계좌번호 1 생략)	657,632	예금잔액	갑 제11-1호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갑 제11-2호증 금융거래내역 및 은행 회신문
8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162,809	예금잔액	
9	P은행 (계좌번호 3 생략)	3,071	예금잔액	
10	Q조합 (계좌번호 4 생략)	64,631	예금잔액	
적극재산 계		888,143		

다. 사해행위 당시 채납자의 재산상태 - 소극재산

1)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본 사건의 경우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

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납자의 조세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표1>에 기재된 조세채권 중 순번 1내지 6번의 조세채권은 채납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을 포함한 채납자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3> 과 같이 184,620,220원입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참조).

〈표3〉 채납자의 소극재산				(단위: 원)
번호	내용	금액	채권자	비고
1	국세	184,620,220	원고	본세만 계산
소극재산 계		184,620,220		
적극재산 계 - 소극재산 계		△183,732,077	채무초과	

라.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채무초과상태

피고와 채납자 사이의 이 사건 계약 및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 채납자의 사해의사

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납자는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를 2019년 8월말과 9월

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체납처분이 진행 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갑 제6호증 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참조).

4. 피고의 악의

가. 대법원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는 체납자의 처제로서 체납자와 가까운 지역인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며 체납자의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체납자에게 국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 나아가 국세 체납 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21.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대금 지급내역 및 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8. 6.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소유권이전에 의구심을 느낀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은 2021. 9. 6.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R은행에 요구하여 회신 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

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7호
증 F의 답변서, 갑 제12호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참조).

6. 결론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채납자와 그의 처제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등 일
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취소와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S, T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광진구 U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81.51㎡

2층 122.09㎡

3층 122.2㎡

4층 91.04㎡

5층 89.55㎡

6층 74.75㎡

옥탑1층 15.92㎡(연면적제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S 대 130.9㎡

2. 서울특별시 광진구 T 대 127.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6층 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8.83㎡

(대지권의 표시)

1.2 소유권대지권 258.5분의 29.36 . 끝.

